

북한 특수자료 관리에 관한 법률안 (김건의원 대표발의)

| | |
|----------|-------|
| 의안 번호 | 18087 |
|----------|-------|

발의연월일 : 2026. 4. 3.

발 의 자 : 김 건 · 최보윤 · 진종오
김기현 · 박충권 · 김석기
김상훈 · 한지아 · 우재준
이성권 의원(10인)

제안이유

현재 북한 특수자료는 국가정보원의 지침인 「특수자료 취급지침」에 따라 관리되고 있음.

그런데 북한 특수자료의 경우 국가안전보장 측면을 고려하면 보다 엄격하고 체계적으로 관리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법률이 아닌 지침으로 관리하고 있어 북한 특수자료의 취급 및 보안 등에 문제가 생길 우려가 높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북한 특수자료의 관리 전반에 대해서 법률에 직접 규정함으로써 북한 특수자료의 관리 체계를 확립함과 아울러 국가안전보장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북한 특수자료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북한

특수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국가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북한 특수자료의 관리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통일부에 특수자료심의위원회를 설치함(안 제5조).

다. 북한자료를 체계적으로 분류·관리·이용하기 위하여 통일부장관이 북한자료의 분류 기준 및 취급·관리·보안에 관한 기준을 각각 수립하도록 함(안 제6조).

라. 취급기관의 장은 통일부장관이 수립한 분류 기준에 따라 특수자료로 분류하고, 특수자료 목록을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안 제7조).

마. 취급기관의 장은 고유업무 및 학술조사 등의 수행 등 특수자료 취급이 불가피한 경우에 한정하여 감독기관의 장으로부터 인가를 받아 특수자료를 취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바. 취급기관의 장은 특수자료의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 등 특수자료 보안 침해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사실을 지체 없이 소관 감독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해당 감독기관의 장은 통일부장관 및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도록 함(안 제10조).

사. 정부가 대학, 민간단체 및 국공립 연구기관 등에서 실시하는 특수자료에 대한 연구·조사 및 연계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북한 특수자료 관리에 관한 법률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북한 특수자료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북한 특수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국가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특수자료"란 북한자료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제7조에 따라 분류된 자료를 말한다.

가. 대한민국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내용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자료

나. 북한의 구성원 또는 지령을 받은 자의 폭력·파괴 활동을 찬양·고무·선전하는 내용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자료

2. "취급기관"이란 특수자료를 수집·보유하고 있는 기관 및 단체를 말한다.

3. "감독기관"이란 취급기관을 지도·감독하는 중앙행정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특수자료의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

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적용 범위)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정보 및 보안 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에서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정보의 분석을 목적으로 관리하는 자료에 대해서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장 특수자료의 관리

제5조(특수자료심의위원회) ① 특수자료의 관리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통일부에 특수자료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특수자료의 관리 체계 개선에 관한 사항
2. 제6조에 따른 기준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제7조제2항에 따른 분류 요청에 대한 판단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특수자료의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장은 통일부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국가정보원장이 지명하는 1급 상당 공무원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
2. 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 ⑤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통일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 ⑥ 제4항제2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⑦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⑧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기준 수립 등) ① 통일부장관은 특수자료를 체계적으로 분류·관리하기 위하여 특수자료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각각 수립하여야 한다.

1. 분류 기준

2. 취급·관리·보안 기준

- ② 통일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준을 수립 또는 변경하려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 ③ 통일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준을 수립 또는 변경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④ 통일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준의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관련 기관·단체에게 자료

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기준 수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특수자료의 분류) ① 취급기관의 장은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분류 기준에 따라 분류한 특수자료 목록을 감독기관을 거쳐 통일부장관 및 국가정보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취급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특수자료의 분류에 대한 판단이 어려운 때에는 소관 감독기관의 장을 거쳐 통일부장관에게 분류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통일부장관은 국가정보원장과 협의를 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수자료를 분류하고, 그 결과를 취급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③ 취급기관의 장은 국민의 안보의식 향상 및 학술연구나 통일 공감대 확산 및 북한 이해 등에 필요한 특수자료를 재분류할 수 있다. 이 경우 재분류한 특수자료 목록을 감독기관을 거쳐 통일부장관 및 국가정보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특수자료 취급기관의 인가 등) ① 특수자료를 취급하려는 기관 및 단체의 장은 감독기관의 장에게 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취급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목적 외에는 특수자료를 취급할 수 없다.

1. 해당 기관의 고유업무 수행원
2. 학술조사 및 연구 수행

3. 다른 취급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수입대행 및 제공

4. 그 밖에 특수자료 취급이 불가피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감독기관의 장은 특수자료의 취급 목적, 분류의 적정성 및 보안대책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인가하여야 한다.

④ 감독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특수자료 취급을 인가한 때에는 통일부장관과 국가정보원장에게 지체 없이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⑤ 통일부장관은 국가정보원장과 사전 협의를 거쳐 특수자료의 보안·관리 및 취급에 관한 지침을 작성하여 감독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⑥ 그 밖에 특수자료의 인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특수자료 취급기관 인가 해제) ① 감독기관의 장은 제8조에 따라 인가를 받은 취급기관의 장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인가를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직권으로 인가를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1. 제8조제2항의 목적이 상실되거나 중대한 변경이 생긴 경우
2. 통일부장관 또는 국가정보원장이 중대한 보안문제가 있다고 인정하여 인가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

3. 제8조에 따라 인가를 받고 1년 이내에 특수자료 취급 실적이 없는 경우

② 소관 감독기관의 장은 취급기관이 보유한 특수자료의 처리결과를 확인한 후 인가를 해제하여야 하며, 인가 해제 사실을 통일부장관과 국가정보원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취급기관 인가 해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통보의무) 취급기관의 장은 특수자료의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 등 특수자료 보안 침해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사실을 지체 없이 소관 감독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해당 감독기관의 장은 통일부장관 및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장 보칙

제11조(특수자료의 연구·조사·연계 지원) 정부는 대학, 민간단체 및 국공립 연구기관 등에서 실시하는 특수자료에 대한 연구·조사 및 연계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지도·감독) ① 감독기관의 장은 특수자료 관리 실태에 대한 조사를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통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통일부장관 및 감독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의 결과 위법

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각 소관 취급기관에 시정을 명령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취급기관에 대한 지도·감독·조사·조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시정명령) 통일부장관은 특수자료가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해칠 명백한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수자료의 수거, 관리 중지, 파기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제14조(비밀유지의 의무) 특수자료와 관련된 직무에 종사하거나 종사 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조(권한의 위임·위탁) 통일부장관 및 감독기관의 장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특수자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관련 법령에 따라 특수자료로 분류된 자료는 이 법에 따른 특수자료로 본다. 다만, 취급기관의 장은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해당 특수자료를 제6

조에 따라 다시 분류하여야 한다.

제3조(특수자료 취급 인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관련 법령에 따라 받은 특수자료 취급 인가는 이 법에 따른 특수자료 취급 인가로 본다. 다만, 인가를 받은 취급기관의 장은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8조에 따라 다시 인가를 받아야 한다.